

극동대학교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규정

극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

제정 2025.05.22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학칙」 제34조 및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에 따라 극동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사회복지현장실습(이하 “현장실습”이라 한다)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이수 교과목을 말한다.
2. 본 대학교 사회복지학과와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서 정하는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(이하 “실습기관”)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사회복지기관에서 학생에게 이론의 적용, 실무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을 말한다.
3. 수업은 실습기관에서의 현장실습과 학교에서의 세미나 수업으로 구성됨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 범위) 이 규정은 본 대학교의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수강 학생의 사회복지현장실습 전반에 적용된다.

제2장 현장실습 운영

제4조(현장실습의 기간) ① 현장실습은 방학 중 실습과 학기 중 실습으로 이뤄진다. 단, 학기 중 실습은 현장실습 세미나 수강 학기 내에 종료하여야 한다.

- ② 부득이하게 ①항의 원칙대로 이행하지 못할 시 예외적으로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의 승인을 득하고, 현장실습 후 실습수업 수강을 최대 1년 이내에 완료하는 경우 인정한다.
- ③ 실습기관에서 160시간 이상 근무하고, 대학교에서 30시간 이상 실습세미나 수업을 수강하여야 한다. 단, 2020학년 이전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과목 중 일부라도 수강한 학생의 실습기관의 근무는 120시간 이상, 실습세미나 수업은 30시간 이하로 할 수 있다.

제5조(현장실습 기관) ①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·시설, 기관 및 단체 중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시행규칙 제3조 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실습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.

② 현장실습 신청 학생은 반드시 현장실습기관의 적격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제6조(현장실습지도자의 자격) 현장실습기관 요건에 적합한 기관이라 하더라도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시행규칙 3조 2항 별표 1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실습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하여야 한다.

1.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
2.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
3.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일 것

제7조(현장실습의 신청 및 자격) ① 본 대학교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실습 세미나 교과목을 개설하는 전공의 전공자, 융합전공,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자로 2학년 이상 재학 중인 학생이어야 한다.

제8조(현장실습생의 의무와 권리) ① 현장실습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현장실습 규정에 따른 절차와 기준
2. 실습기관의 안전관리규정과 기준
3. 현장실습 중 습득하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사항 누설 금지 등

② 현장실습생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받는다.

1. 현장실습 교육 및 실습수행에 관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
2. 현장실습 중 보건 및 산업재해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사고 및 재해 시 보상받을 권리
3. 현장실습 중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
4. 이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 기준 또는 현장실습 운영 계획과 다른 사항의 발생 시 조치 받을 권리

제9조(실습생 제출 정보 및 서류) ① 현장실습을 수행하는 실습생은 실습확정 후 현장실습 담당 조교에게 연락하여 현장실습 관련 다음의 정보를 고지해야 한다.

1. 현장실습 수행기관명 및 적격성 확인 여부
2. 현장실습 수행기간
3. 현장실습 지도 슈퍼바이저 정보

② 현장실습을 수행하는 실습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현장실습 담당 조교를 통해 현

장실습 교과목 담당교수(이하 “교과목 담당교수”라 한다)에게 제출하며 이는 현장실습 확인 및 교과목 평가의 주요 근거로 활용된다.

1. 사회복지현장실습 보고서(학생작성): 실습계약서, 실습일지 및 실습내용, 과제 등 포함
 2. 실습평가서(기관작성)
 3. 실습확인서(기관작성)
- ③ 해당 자료는 학교의 별도 양식이 아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양식을 따른다.
- ④ 이 외 필요에 따라 교과목 담당 교수는 실습교과목 평가를 위해 추가적인 서류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⑤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습 서류 미제출 및 누락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실습생에게 있다.
- ⑥ 사회복지현장실습 보고서는 실습실 혹은 실습실에 준하는 공간에 보관한다. 보관자료는 최소 5년 보관을 의무로 하며, 그 이후에는 파기할 수 있다.

제10조(실습비용) 실습비용, 교통비, 식비 등 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습생이 부담한다.

제3장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운영

제11조(실습 세미나 운영) 현장실습 세미나 운영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.

1. 1회당 2시간 이상의 실습 세미나를 총 15회 이상 실시한다.
2. 학사,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의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 경험 또는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가 지도한다.
3.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30명 이내여야 하며, 30명 이상일 때는 분반하여 운영한다.

제12조(현장실습 이수 학점) ① 현장실습 과목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, 교과목으로 3학점을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- ② ①항의 필수 이수 교과목 외에 추가 현장실습은 교과목이 개설되는 경우 추가 실습을 진행할 수 있다.

제13조(현장실습의 평가 및 성적처리) ① 현장실습의 평가방법 등은 본 대학교의 학칙에 따른다.

- ② 현장실습 성적은 기관실습 지도자가 부여한 평가점수와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 평가점수를 합산한 최종 평가점수를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다.
- ③ 실습기관에서는 자체 기준 및 규정 등으로 현장실습생을 평가하거나 그 결과에 대한 징계, 불이익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.

제14조(현장실습 지원 유의사항) ①출산, 군휴학, 질병휴학 등 학생 개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관실습 후 실습교과목 이수가 어려운 경우 사회복지학과 전공회의를 통해 과반수 이상의 승인을 얻어 학생의 학기 외 기관실습을 최대 3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.

- ② 160시간의 기관실습과 30시간의 실습 세미나 이수를 모두 진행한 후 자격증 취득을 위한 요건 획득이 가능하다
- ③ 기관실습 후 실습세미나를 수강하지 않거나 기관실습 없이 실습세미나를 수강하는 경우 학점부여는 불가하며 자격증 취득 위한 실습(요건)으로 인정이 되지 아니한다.

제15조(사회복지현장실습 기타 안내사항) ①사회복지현장실습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추기 위한 법정필수 과목 중 하나로서 관련 법령(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)과 전공내규에 따라 운영된다.(학과 홈페이지 내 게시)

- 1.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제시된 내용을 준수한다.
- 2. 사회복지학전공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규정을 따른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.